

조 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10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등록된 사항변경 나. 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업무개시명령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개수명령 사.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차. 청문 등의 실시 카.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의 수리 타. 약사감시원의 임명	○ 「약사법」 제20조제2항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78조	보건소장

별표 중 2.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3.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 「의료법」 제33조제3항,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조산원(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의 개설신고의 수리 나. 의원 등의 변경신고의 수리 다.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라. 업무개시명령 마.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바. 시정명령·영업정지명령·개설허가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같은 법 제59조제2항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및 제84조 ○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별표 중 4.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수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4.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수리 등	○ 「의료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보건소장

별표의 5. 안마시술소, 점골소, 침구시술소 개설신고 수리의 사무명란 중 “침구시술소 개설신고 수리”를 “침구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한다.

별표 중 6. 안경업소·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의 가목 및 나목의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중 7.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수리의 사무명란 중 “신고수리”를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하고, 7.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수리란 중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지도감독·시정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청문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법」 제61조, 제63조, 제68조, 제84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 「의료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	--

별표 중 10.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0.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지정취소 다.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라.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등 마. 구급차 운용의 정지·말소등록 바.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사. 구급차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아.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업무 정지 자. 청문 차. 과징금부과및징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같은 법 제31조의3, 제35조 ○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시행규칙 제36조의2 ○ 같은 법 제45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55조제2항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7조	보건소장

별표 중 14.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란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기존의 다목부터 자목까지를 라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란의 차목와 카목을 각각 카목과 타목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8조	

별표 중 1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란의 나목 중 “재개 신고” 를 “업무재개 신고” 로 한다.

별표 중 1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1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란 다음에 18.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란과 19.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가능 사전승인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 「의료법」 제38조,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등록사항변경, 검사결과통보, 관계서류제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시정명령, 사용중지 등	○ 「의료법」 제63조	
18.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나.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	○ 같은 규칙 제9조	
다. 지도 및 보고	○ 같은 규칙 제11조	
19. 의료기관 영리목적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가능사전승인		
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개별적 사전승인	○ 「의료법」 제27조제3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등록된 사항변경 나. 폐업휴업재개 신고의 수리 다. 보고와 검사 <신 설> 라. 폐기명령 등 <신 설> 마.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아. 청문 등의 실시 자.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의 수리 차. 약사감시원의 임명	○ 「약사법」 제20조 제4항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78조 ○ 같은 법 제88조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78조	보건 소장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등록된 사항변경 나. 폐업휴업 업무재개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업무개시명령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개수명령 사.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차. 청문 등의 실시 카.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의 수리 타. 약사감시원의 임명	○ 「약사법」 제20조 제4항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78조 ○ 같은 법 제88조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78조	보건 소장
3.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이하 “의원 등”이라 한단의 개설신고의 수리 나. 의원 등의 변경신고의 수리 다.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신 설>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마. 시정명령·영업정지명령·개설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바. 과태료부과 및 징수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의료법」 제33조 제5항 ○ 같은 법 제33조 제6항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83조 제4조 및 제44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77조	보건 소장	3.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이하 “의원 등”이라 한단의 개설신고의 수리 나. 의원 등의 변경신고의 수리 다.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라. 업무개시명령 마. 보고와 업무검사 등 바. 시정명령·영업정지명령·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사. 과징금부과 및 징수 아. 과태료부과 및 징수	○ 「의료법」 제3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같은 법 제3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같은 법 제39조 제2항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3조 제4조 및 제44조 ○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보건 소장
4.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수리	○ 「의료법」 제35조	보건 소장	4.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수리 등	○ 「의료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보건 소장
5. 안마시술소, 점골소, 침구시술소 개설신고 수리 가. ~ 나. (생 략)			5. 안마시술소, 점골소, 침구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나. (현행과 같음)		
6. 안정업소·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제2조	보건 소장	6. 안정업소·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조 제4조	보건 소장

현행			개정안		
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 같은 법 제13조		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 같은 법 제3조 <u>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u>	
다. ~ 마. (생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7.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수리		보건소장	7.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u>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u>		보건소장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지도감독시정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 「의료법」 제61조, 제63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다. 지도감독시정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청문	○ 「의료법」 제61조, 제63조, <u>제64조</u>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법」 제92조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법」 제92조 <u>같은 법 시행령 제45조</u>	
10.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10.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u>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u>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 같은 법 제35조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 같은 법 제31조의3, 제35조	
다.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같은 법 제34조		다.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같은 법 제34조, <u>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u>	
<u>〈신설〉</u>			<u>라.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등</u>	○ <u>같은 법 제44조의2</u>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u>	
<u>〈신설〉</u>			<u>마. 구급차 운용의 정지·말소등록</u>	○ <u>같은 법 제45조 제2항</u>	
<u>〈신설〉</u>			<u>바.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u>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u>	
라.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 감독	○ 같은 법 제50조		사.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 같은 법 제50조	
마.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업무 정지)	○ 같은 법 제55조		아.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업무 정지)	○ 같은 법 제55조 <u>제2항</u>	
바. 청문	○ 같은 법 제56조		자. 청문	○ 같은 법 제56조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7조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7조	
14.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14.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u>〈신설〉</u>			<u>다. 폐업·휴업·업무개개 신고</u>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u>	
다. ~ 자. (생략)			라. ~ 차. (현행과 같음)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8조		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8조	
1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16.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생략)			가. (생략)		

현행			개정안		
나. 휴업·폐업 및 재개 신고 다. ~ 사 (생 략)	○ 같은 법 제44조 의2		나. 휴업·폐업 및 <u>업무재개</u> 신고 다. ~ 사 (생 략)	○ 같은 법 제44조의2	
17. 특수의료장비의설치·운영에관 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등록변경 <u><신 설></u>	○ 「의료법」 제 38조 「특수의료장 비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규칙」 제2 조·제4조	보건 소장	17. 특수의료장비의설치·운영에관 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u>등록사항변경, 검사결과통보, 관계서류제출</u> <u>나. 사전명령, 사용중지 등</u>	○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조· <u>제 7조·제9조</u> ○ 「의료법」 <u>제63조</u>	보건 소장
<u><신 설></u>			18. 의료기관 <u>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u> 가. <u>신고및변경신고 휴업·재개업 ·폐업 신고</u> <u>나.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u> <u>다. 지도 및 보고</u>	○ 「의료법」 제6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 같은 규칙 제9조 ○ 같은 규칙 제11조	보건 소장
<u><신 설></u>			19.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가 <u>중 사전승인</u> 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개별적 사전승인	○ 「의료법」 <u>제27조제8항</u>	보건 소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변경하고, 그 근거법령과 사무명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중 업무개시 명령 사무 신설
-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중 구급차 운용 신고·정지 등의 사무 신설
-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중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사무 신설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중 시정명령, 사용중지 등의 사무 신설
-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 사전승인 사무 신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근거법령 정비와 이에 따른 사무명 정비

조 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10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공유재산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심의회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의원
 2.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사람
 3.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재산관리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유재산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심의회 위원 해촉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②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연구·용역·자문·감정·조사·수입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이 외에 심의회의 기능, 운영 등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중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를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구의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을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 을 “법 제27조제4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7조제4항” 을 “법 제27조제6항” 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영 제17조제6항” 을 “영 제17조제7항”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중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는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2조제5항” 을 “제2조제8항” 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제2조” 를 “제2조제13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거나” 로 한다.

제30조제1항과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으로 한다.

제32조 중 “영 제16조 및 제34조” 를 “영 제34조” 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으로 하고, 같은 법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 를 “제2조제13호” 로 “공업단지” 를 “산업단지”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영 제38조제1항제4호·6호·제7호” 를 “영 제38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으로 한다.

제63조와 제64조제2항 중 “경리관” 을 각각 “재무관” 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 을 “분임재무관” 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를 각각 “기부심사위원회” 로 한다.

제69조제7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로 한다.

제72조제7항 중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한다.

제82조와 제9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유재산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공유재산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심의회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 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의원
<신 설>	2.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사람
<신 설>	3.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신 설>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현행	개정안
<u>〈신설〉</u>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운영·기능 및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재산관리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이상 공무원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유재산 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u>〈신설〉</u>	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u>〈신설〉</u>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u>〈신설〉</u>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u>〈신설〉</u>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현행	개정안
〈신설〉	②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신설〉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본인이 연구·용역·자문·감정·조사·수임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신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⑤ 이 외에 심의회의 기능, 운영 등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u>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u>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 ----- ----- ----- <u>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u>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u>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구의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u>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 <u>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u>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법 제27조제4항</u> ----- -----

현행	개정안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u>법 제27조제4항</u> 및 <u>영 제21조의 입찰조건</u> 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 ----- 법 제27조 제6항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사용료의 감면) <u>법 제24조제2항</u> 및 <u>영 제17조제6항</u> 에 따라 종로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제22조의2(사용료의 감면) ----- ----- 영 제17조제7항 ----- ----- ----- ----- ----- ----- -----.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u>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u>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 ----- -----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는 경우에는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의 범위) ----- ----- -----

현행	개정안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 ----- - 제2조제8항 -----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생략)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2. ----- ----- 제2조제13호 ----- -----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공유재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 -----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③ (생략)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이 ----- -----.

현행	개정안
⑤ (생략) 1. (생략)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 6. (생략)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따른다. 1. ~ 3. (생략)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투자 촉진법」 ----- ----- ----- ----- 3. ----- ----- ----- ---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거나 ----- ----- ----- ----- ----- ----- ----- 4. ~ 6.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 ----- ----- ----- -----

현행	개정안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 ----- ----- ----- -----.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생략)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u>공업단지</u> 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u>당해</u>	4. ----- - 제2조제13호----- ----- ----- <u>산업단지</u> ----- ----- ----- ----- -----

현행	개정안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 7.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영 제38조제1항제4호·6호·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 4. (생략)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부서장은 물품을 매입·수리 또는 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u>경리관</u>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64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생략) ② <u>경리관</u>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63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65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분임경리관</u>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 해당 -----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영 제38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 2. ~ 4. (현행과 같음)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 ----- ----- ----- ----- -----. 제63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 ----- ----- 재무관 ----- ----- -----. 제64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무관 ----- ----- -----. 제65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분임재무관 ----- -----

현행	개정안
있다.	-----.
제66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u>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u>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6조(기증품의 취득) ① ----- ----- ----- ----- ----- <u>기부심사위원회</u> ----- -----.
② 주관부서장은 <u>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u>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u>기부심사위원회</u> ----- -----.
③ <u>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u> 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③ <u>기부심사위원회</u>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물품의 가격) (생략)	제69조(물품의 가격)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7. <u>제1호부터 제6호까지</u> ----- ----- ----- ----- -----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⑥ (생략)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	⑦ <u>재무관</u> ----- ----- -----

현행	개정안
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생략) 제82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 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 ⑧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신설하고, 법제처 권고의견을 수렴하여 근거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 심의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회 해촉 및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
- 제명 띄어쓰기 등 수정
- 상위법령 위임일탈사항 정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 반영
 - 일반재산을 대부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대부료율 1,000분의10을 적용받는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특정

조 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10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인증하거나 첨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 중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각종의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 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의 1. 제 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란, 라. 사실 등에 관한 사항란, 아. 기타 제증명란 및 차.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서	1건	400원	
---	----	------	--

(2) 무허가건물 확인원	1건	5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주택	800원	
라. 사실 등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서	1건	1,000원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건	800원	
(3) 입지기준확인서	1건	2,000원	
아. 기타 제증명			
(1) 그 밖의 사실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1건	400원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차.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서			
(1) 토지(임야)대장	1필지 1장 초과마다	500원 100원	
(2) 건축물대장	1건	500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원	
(5)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건	800원	
(6) 자동차등록원부(갑,을)	1건	300원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 관내	1건	500원	
- 관외	1건	1,500원	
(8) 농지원부	1건	1,000원	
(9) 교육관련 민원서류			
- 성적증명서	1건	무료	
- 졸업증명서	1건	무료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200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200원	

별표의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중 (10)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란, (13) 부동산중개업관련 신고사항란, (20)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등에 관한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다)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원	
라)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	7,000원	
마)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변경	1건	10,000원	
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13) 부동산중개업관련 신고사항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	1건	20,000원	
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	1건	30,000원	
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라)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 신고	1건	15,000원	
마)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	800원	
바)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사)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 변경)신고	1건	800원	
(20)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등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나)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40,000원	
- 개설장소이전	1건	40,000원	
다)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안마시술소 포함)	1건	20,000원	
라)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안마시술소 포함)	1건	10,000원	
- 개설장소이전	1건	10,000원	
마)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1건	10,000원	
바)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원	
사)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아)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별표의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인증하거나 첨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u>자로서</u>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생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생략)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 ----- ----- <u>사람으</u> <u>로</u> -----.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4.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5조에 따라 등록된 <u>참전유공자</u>----- ---

현행	개 정 안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 ---- 제6조 -----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 -----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각종의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 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 증명 확인 발급 사항	1. 제 증명 확인 발급 사항																																																																																																																																
<table><tr><th>종목</th><th>단위</th><th>금액</th><th>비고</th></tr><tr><td>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r><td>(1)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td><td>1건</td><td>400원</td><td></td></tr><tr><td>(2) 무허가건물 확인원</td><td>1건</td><td>500원</td><td></td></tr><tr><td>(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td><td>1개년/주택</td><td>800원</td><td></td></tr><tr><td>(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열람</td><td>1개년/주택</td><td>200원</td><td></td></tr><tr><td>라. 사실 등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r><td>(1) 공장 등록 증명</td><td>1건</td><td>1,000원</td><td></td></tr><tr><td>(2)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td><td>1건</td><td>800원</td><td></td></tr><tr><td><u><신 설></u></td><td></td><td></td><td></td></tr><tr><td>아. 기타 제증명</td><td></td><td></td><td></td></tr><tr><td>(1)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td><td>1건</td><td>400원</td><td></td></tr><tr><td>(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td><td>1건</td><td>600원</td><td></td></tr><tr><td>(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td><td>1개년/1필지</td><td>800원</td><td></td></tr><tr><td>차.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td><td></td><td></td><td></td></tr><tr><td>(1) 토지(임야)대장</td><td>1필지</td><td>500원</td><td></td></tr></table>	종목	단위	금액	비고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400원		(2) 무허가건물 확인원	1건	5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개년/주택	800원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열람	1개년/주택	200원		라. 사실 등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	1건	1,000원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건	800원		<u><신 설></u>				아.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1건	400원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개년/1필지	800원		차.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토지(임야)대장	1필지	500원		<table><tr><th>종목</th><th>단위</th><th>금액</th><th>비고</th></tr><tr><td>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r><td>(1)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서</td><td>1건</td><td>400원</td><td></td></tr><tr><td>(2) 무허가건물 확인원</td><td>1건</td><td>500원</td><td></td></tr><tr><td>(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td><td>1주택</td><td>800원</td><td>단위 개정</td></tr><tr><td><u><삭 제></u></td><td></td><td></td><td></td></tr><tr><td>라. 사실 등에 관한 사항</td><td></td><td></td><td></td></tr><tr><td>(1) 공장 등록 증명서</td><td>1건</td><td>1,000원</td><td></td></tr><tr><td>(2)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td><td>1건</td><td>800원</td><td></td></tr><tr><td>(3) 입지기준확인서</td><td>1건</td><td>2,000원</td><td>신설</td></tr><tr><td>아. 기타 제증명</td><td></td><td></td><td></td></tr><tr><td>(1) 그 밖의 사실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서</td><td>1건</td><td>400원</td><td></td></tr><tr><td>(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td><td>1건</td><td>600원</td><td></td></tr><tr><td>(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td><td>1필지</td><td>800원</td><td>단위 개정</td></tr><tr><td>차.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서</td><td></td><td></td><td></td></tr><tr><td>(1) 토지(임야)대장</td><td>1필지</td><td>500원</td><td></td></tr></table>	종목	단위	금액	비고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서	1건	400원		(2) 무허가건물 확인원	1건	5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주택	800원	단위 개정	<u><삭 제></u>				라. 사실 등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서	1건	1,000원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건	800원		(3) 입지기준확인서	1건	2,000원	신설	아. 기타 제증명				(1) 그 밖의 사실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1건	400원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단위 개정	차.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서				(1) 토지(임야)대장	1필지	500원	
종목	단위	금액	비고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400원																																																																																																																															
(2) 무허가건물 확인원	1건	5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개년/주택	800원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열람	1개년/주택	200원																																																																																																																															
라. 사실 등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	1건	1,000원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건	800원																																																																																																																															
<u><신 설></u>																																																																																																																																	
아.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1건	400원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개년/1필지	800원																																																																																																																															
차.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토지(임야)대장	1필지	500원																																																																																																																															
종목	단위	금액	비고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서	1건	400원																																																																																																																															
(2) 무허가건물 확인원	1건	5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주택	800원	단위 개정																																																																																																																														
<u><삭 제></u>																																																																																																																																	
라. 사실 등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서	1건	1,000원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건	800원																																																																																																																															
(3) 입지기준확인서	1건	2,000원	신설																																																																																																																														
아. 기타 제증명																																																																																																																																	
(1) 그 밖의 사실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1건	400원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단위 개정																																																																																																																														
차.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서																																																																																																																																	
(1) 토지(임야)대장	1필지	500원																																																																																																																															

현행				개정안			
(2) 건축물관리대장	1장 초과마다	100원		(2) 건축물대장	1장 초과마다	100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건	500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건	500원	
(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1,000원		(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1,000원	
(5)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1건	800원		(5)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1건	800원	
(6)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1건	300원		(6)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1건	300원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500원		- 관내	1건	500원	
- 관외	1건	1,500원		- 관외	1건	1,500원	
(8) 농지원부	1건	1,000원		(8) 농지원부	1건	1,000원	
(9) 교육관련 민원서류				(9) 교육관련 민원서류			
- 성적증명서	1건	무료		- 성적증명서	1건	무료	
- 졸업증명서	1건	무료		- 졸업증명서	1건	무료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200원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200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200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200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종 목	단 위	금액	비 고
(10)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1건	20,000원	금액 개정
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7,000원	
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다)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원	
라)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	7,000원	
마)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변경	1건	7,000원	금액 개정
<신 설>			
(13) 부동산중개업관련 신고사항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	1건	20,000원	
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	1건	30,000원	
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라)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 신고	1건	15,000원	
마)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	800원	
<신 설>			
<신 설>			
<신 설>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종 목	단 위	금액	비 고
(10)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1건	20,000원	금액 개정
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10,000원	
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다)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원	
라)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	7,000원	
마)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변경	1건	10,000원	금액 개정
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신설
(13) 부동산중개업관련 신고사항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	1건	20,000원	
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	1건	30,000원	
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라)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 신고	1건	15,000원	
마)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	800원	
바)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신설
사)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 변경)신고	1건	800원	신설
(20)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등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신설
나)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40,000원	신설
- 개설장소이전			
다)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안마시술소 포함)	1건	40,000원	신설
라)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1건	20,000원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안마시설 소 포함)			
				- 개설장소이전			
				마)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1건	10,000원	신설
				바)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원	신설
				사)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신설
				아)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구민불편 인허가 사항 개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수수료 현실화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고사항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수료 징수방법 및 반환규정 신설 (안 제3조의2, 안 제7조의2)
- 수수료 감면의 근거법령 정비 (안 제6조제1항)
- 규제정비 등에 따른 수수료 종목 신설, 단위 정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정비 (별표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조 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105호****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운영” 을 “설치 및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합창단” 을 “구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 이라 한다)” 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성인을 단원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이하 “구립합창단” 이라 한다)과 초·중등학생을 단원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이하 “합창단” 이라 한다)은” 을 “합창단은 합창단 별” 로 하고 “50명” 을 “각각 50명” 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단원의 자격) 합창단의 단원은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구립합창단의 단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2.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는 거주지를 예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해촉 되지않은” 을 “위촉 해제되지 않은” 으로 한다.

제6조 제목 “해촉” 을 “위촉 해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

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해촉” 을 “위촉 해제”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출한” 를 “전출하거나 전학한” 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① 구립합창단 단원은 연령이 만 60세가 되면 그 해 12월 31일에,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은 중학교 졸업일에 당연 위촉 해제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운영) ① <u>합창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한다.</u>	제2조(운영) ① <u>합창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한다.</u>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u>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성인을 단원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이하 “구립합창단” 이라 한다)과 초·중등학생을 단원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u>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u>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성인을 단원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이하 “구립합창단” 이라 한다)과 초·중등학생을 단원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u>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u>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성인을 단원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이하 “구립합창단” 이라 한다)과 초·중등학생을 단원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u>
② 구청장은 <u>합창단</u> 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 이라 한다)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u>합창단</u> 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 이라 한다)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u>구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 이라 한다)</u> 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 이라 한다)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u>구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 이라 한다)</u> 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 이라 한다)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u>구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 이라 한다)</u> 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 이라 한다)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u>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이하 “합창단” 이라 한다)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u>	제3조(구성) <u>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이하 “합창단” 이라 한다)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u>	제3조(구성) <u>합창단은 합창단별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한 각각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u>	제3조(구성) <u>합창단은 합창단별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한 각각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u>	제3조(구성) <u>합창단은 합창단별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한 각각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u>
제4조(단원의 자격) <u>단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60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u>	제4조(단원의 자격) <u>단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60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u>	제4조(단원의 자격) <u>합창단의 단원은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u>	제4조(단원의 자격) <u>합창단의 단원은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u>	제4조(단원의 자격) <u>합창단의 단원은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u>
		1. 구립합창단의 단원은 서울특별시	1. 구립합창단의 단원은 서울특별시	1. 구립합창단의 단원은 서울특별시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위촉 등) ① ~ ② (생 략)

③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자중 해촉 되지않은 사람은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제6조(해촉) ① 단원의 연령이

만60세가 되면 그 해 12월 31일 당연
해촉된다.

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구 이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2.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는
거주지를 예외로 한다.

제5조(위촉 등) ① ~ ② (생 략)

③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자중 위촉 해제되지 않은 사람은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제6조(위촉 해제) ① 구립합창단

단원은 연령이 만 60세가 되면 그 해
12월 31일에,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은
중학교 졸업일에 당연 위촉
해제된다.

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구 이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전학한 경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종로구 어린이에게 음악적 재능과 취미 개발의 기회를 마련하면서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운영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구청장은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운영함(안 제2조제1항)
-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을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조제2항)
- 소년소녀합창단의 인원 수는 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함(안 제3조)
-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자격(안 제4조)
-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은 중학교 졸업일에 당면 위촉 해제됨(안 제6조)

조 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10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관련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2.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제안사업
3. 평생교육 어학교실 운영
4. 지역교육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의 평생교육 진흥사업

제6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4. 평생교육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교육담당 팀장”을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 및 지역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협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경비지원) <u>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제4조(경비지원) <u>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u> 1. 평생교육 관련 평생학습동아리활동 2.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제안 사업 3. 평생교육 어학교실 운영 4. 지역교육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 단체 등의 평생교육 진흥사업
제6조(기능) (생략) 1. ~ 2. (생략) <u><신설></u> <u><신설></u> 3.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u> 4. <u>평생교육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u> 5. ----- -----
제7조(구성) ① (생략) ② <u>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을</u>

현행	개정안
1.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 3.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 및 지역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③ ----- -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우리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근거 신설(안 제4조)
- ‘평생교육협의회’ 심의 사항 및 위원의 구성 정비(안 제6조, 제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조 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10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를 “제40조”로 “공인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를 “공인의 규격, 비치 및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에 따른다.”는 “규격,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4항의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과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은 공인등록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전자이미지공인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각각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0조
제2조의2(특수공인)	① ~ ② (생략)	제2조의2(특수공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징수관, 경리관, 회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에 따른다.		③ -----	재무관-----	-----
		-----	규격,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여권과장이 대행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과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은 공인등록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전자이미지공인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각각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신청할 때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		② -----	-----	-----

현행	개정안
란에 찍고, 그 인영을 기획예산과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홍보전산과장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 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에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 를 하여야 한다.	④ 홍보전산과장 -----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 규정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 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공인의 전자이미지 등록업무 부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근거 규정 정비(안 제1조)
-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 권고에 따른 법규 입안 원칙에 따른 정비(안 제2조의2, 안 제8조)
-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의 전자이미지 파일 등록·제공부서 정비(안 제8조)

조 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108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로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우선하여” 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이 우선하여” 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

(제5조 관련)

유형 순위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 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 1~2급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만 70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2	장애등급 3~4급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3	장애등급 5~6급이면서, 미과세대상자	만 65세 이상이면서,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가.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 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우선 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중복 적용 불가)

다. 신청자 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u>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우선하여</u>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 -----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 ----- -----.	
제2조(적용의 범위 등) ① (생략)		제2조(적용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		② ----- -----		

현행	개정안
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 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5조(우선계약) <u>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u>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생략)	----- ----- ----- -----, <단서 삭제> 제5조(우선계약) <u>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u> 제7조(계약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에게는 3년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다. 단, 제1항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규제 조항 정비 등을 통해 장애인 등의 생업 지원 확대 및 자립 생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른 공공시설 판매대 등의 우선계약 대상 추가(안 제1조)
-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인 매점규모의 제한 사항 삭제(제2조제2항 단서삭제)
- 상위법령에 따른 우선계약자의 범위 정비(안 제5조)
- 법령에 위임없는 규제사항인 설치허가 취소사유 삭제(제7조제2항 삭제)
- 근거법령명 등 별표 정비(안 별표)

조 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109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 100분의 20 이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 라 한다) 소재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 100분의 10 이하
3. 구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 100분의 10 이하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 100분의 45 이상
5.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 100분의 15 이하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제4항 중 “보육시설” 을 “어린이집” 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 · 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비
 8. 어린이집 아동 문화 · 체육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보육인의 밤 행사
 9. 보육아동 급식비
 10.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제32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 <u>보육전문가</u> 2. <u>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u> 3. <u>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u> 4. <u><삭제></u> 5. <u>관계 공무원</u> 6. <u>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u> ③ ~ ④ (생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u>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 100분의 20 이하</u> 2. <u>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 100분의 10 이하</u> 3. <u>구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 100분의 10 이하</u> 4. <u>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 100분의 45 이상</u> 5. <u>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 100분의 15 이하</u> <u><삭제></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 (생략)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4. <u>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	제6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u> 5. <u>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u> 6. <u>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
제22조(운영위탁 계약 및 기간) ① ~	제22조(운영위탁 계약 및 기간) ① ~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④ 한 차례의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u>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제21조에 따른다.</u> 제25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생략) ② 수탁자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생략)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① <u>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1. ~ 7. (생략) 8. <u>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u> 9. ~ 10. (생략) 제32조(보조금의 반환) (생략) 1. ~ 3. (생략) 4. <u>법 또는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u> 5.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어린이집</u> ----- ----- 제25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어린이집 아동 문화·체육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보육인의 밤 행사</u> 9. ~ 10. (현행과 같음) 제32조(보조금의 반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5.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 미흡, 상위법령 불일치 등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기능 내용 보완(안 제5조, 제6조)
-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사유 중 법령에 위임없는 사항 삭제(안 제25조)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사업비 보조금 지원근거 보완(안 제31조)
- 상위법령과 다른 보조금 반환 규정 정비 (안 제32조)
- 그 밖의 용어 정비 등

조 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110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4호” 를 “제2조제3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3호의 2” 를 “제2조제4호” 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를 “법 제7조의5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구성” 을 “구성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 제6호 · 제7호 및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제8호를 제5호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분쟁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분쟁 조정에 참여하여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중 “업무” 를 “기능”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과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기존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 “제3항” 을 “제4항” 으로 “변경하고자” 를 “변경·취소하고자” 로 하고, 제6항(기존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 “제3항” 을 “제4항” 으로 “변경한” 을 “변경·취소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기존의 제5항)제1호 중 “범위·위치 및 면적” 을 “범위·위치”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변경” 을 “지정·변경·취소” 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지정·변경과” 를 “지정·변경·취소와”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기존의 제6항) 중 “제3항” 을 “제4항” 으로 “변경한” 을 “변경·취소한” 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4조 제목 중 “지정·변경” 을 “지정·변경·취소”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 을 “제13조” 로 “지정·변경할” 을 “지정·변경·취소할”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정·변경대상이” 을 “지정·변경·취소대상이” 으로 “전통상가의” 를 “전통상점가의”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따라 지정된” 을 “따른” 으로 “신청하여야” 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에 조정을” 를 “협의회에 협의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을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 있는 대규모점포 등이”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를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안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16조에 따라” 으로 “제8조에 따른 협의회” 를 “협의회”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2. ----- <u>제2조제3호</u> -----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3. ----- <u>제2조제4호</u> -----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 ----- ---- <u>법 제7조의5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① ~ ③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④ (생략)	1. ~ 4. (생략)
1. ~ 4. (생략)	<u><삭 제></u>
5. 구 안의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u><삭 제></u>
6. 구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u><삭 제></u>
7. 구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u><삭 제></u>

현행	개정안
8.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⑤ ~ ⑦ (생략) <신설>	5. ----- ----- <삭제>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분쟁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분쟁 조정에 참여하여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

현행	개정안
<u>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③ (생략) <신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u>변경하고자 할 때에는</u> 미리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 <u>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u>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u>변경한 경우에는</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u>범위·위치 및 면적</u>	<u>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u>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 1. <u>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u> 2. <u>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u> ⑤ ----- 제4항----- ----- ---- <u>변경·취소하고자</u> ----- ----- ---- ⑥ ----- 제4항----- ----- ----- <u>변경·취소한</u> ----- ----- ----- --. 1. ----- <u>범위·위치</u>

현행	개정안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u>지정·변경</u> 사유 및 목적	2. ----- <u>지정·변경·취소</u> -----
3. 전통상업보존구역 <u>지정·변경</u> 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3. ----- <u>지정·변경·취소와</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u>변경</u> 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시장의 권고나 기준을 반영할 수 있다.	⑦ ----- <u>제4항</u> ----- ----- <u>변경·취소</u> 한 ----- ----- ----- -----.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u>지정·변경</u>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u>지정·변경</u>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 <u>지정·변경·취소</u> -----) --- 제13조----- <u>지정·변경·취소</u> 할 ----- -----.
1. <u>지정·변경대상</u> 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u>전통상가의</u> 역사적·전통적 가치	1. <u>지정·변경·취소대상</u> 이 ----- ----- <u>전통상점가의</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6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에 <u>따라 지정</u> 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	제16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 ----- <u>따라</u> ----- ----- ----- ----- -----

현행	개정안
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u>신청하여야</u>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 <u>구청장에</u> <u>게 신청하여야</u>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 <u>위원회에</u> <u>조정을</u> 요청할 수 있다.	④ ----- ----- ----- <u>협의회에</u> <u>협의를</u> -----.
⑤ <u>구청장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u>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전통</u> <u>상업보존구역안에 있는 대규모점포</u> <u>등이</u>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7조(조건 등의 부과) ① <u>구청장은</u> <u>제1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u> 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u> <u>협의를</u>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조건 등의 부과) ① <u>구청장은</u> <u>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u> <u>역안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16조에</u> <u>따라</u> ----- ----- ----- <u>협의회</u>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제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를 할 수 있는 범위 명시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운영세칙에 대한 조항 신설 및 위원회 구성과 기능 정비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조항 신설

조 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11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교통약자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 나. 교통수단별, 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통안전 관련 단체 임원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의원
4.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종로·혜화경찰서 교통안전 분야 담당과장

제10조(임기) 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교통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직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교통지도에 협조하는 자에 대한 지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로 구성되어 교통 경찰 보조 업무 및 교통질서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교통질서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교통안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교통안전 의식 고취 등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의 교통안전과 주민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통안전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마련(안 제3조)
-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책무 규정 마련(안 제4조)
- 종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종로구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제16조)
- 교통안전 교육 실시(안 제17조)
- 경찰관서, 교육청, 교사·학부모, 관련 단체 등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지도 협력 규정(안 제18 ~ 제19조)
- 교통지도에 협조하는 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마련(안 제20조)

조 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112호****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 를 “제25조”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42조” 를 “제45조”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41조” 는 “제44조” 로 “제4호중” 을 “제4호 중”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전염병” 을 “감염병” 으로 한다.

제5조 중 “선납으로” 를 “당일 납부로” 로 한다.

별표 제목 “수수료액표(제2조 제2항 관련)” 를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제2항 관련)” 으로 하며, 별표 중 5.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과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 법제처 권고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 정비(안 제5조)
- 근거법령에 맞춰 수수료 규정 정비(별표)

규 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칙 제70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의 근거법령란 중 “「의료법」 제33조제4항”을 “「의료법」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으로 하고, 같은 란 중 “같은 법 제33조제5항”을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로 한다.

별표 중 2. 의료기관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의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중 3.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란의 타목 다음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의 파목을 하목으로 한다.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

별표 중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란의 차목을 삭제한다.

별표 중 6.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6.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나. 휴·폐업, 재개업 신고 다. 지위승계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4조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라.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57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2조제2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개설허가(이하 "병원 등"이라 한다) 나. 병원 등의 변경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 같은 법 제33조제5항	보건소장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개설허가(이하 "병원 등"이라 한다) 나. 병원 등의 변경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u>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u> ○ 같은 법 제33조제5항, <u>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u>	보건소장
2. 의료기관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	보건소장	2. 의료기관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 <u>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u>	보건소장
3.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타. (생략) <u><신설></u> <u>파. (생략)</u>			3.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타. (현행과 같음) <u>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u> <u>하. (현행과 같음)</u>	○ <u>같은 법 제69조</u> , <u>같은 법 시행령 제29조</u>	보건소장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자. (생략) 차.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가. ~ 타. (생략)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보건소장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자. (현행과 같음) <u><삭제></u> 가. ~ 타. (현행과 같음)		보건소장
6.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u>나. 변경허가</u> <u>다. 변경신고</u> <u>라. 휴폐업, 재개업 신고</u> <u>마. 지위승계신고</u> <u><신설></u> <u>바. 과태료 부과징수</u>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 <u>같은 법 제51조제3항</u> ○ <u>같은 법 제51조제4항</u>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4조 ○ 같은 법 제62조제2항	보건소장	6.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u>변경허가·변경신고</u> <u><삭제></u> <u><삭제></u> <u>나. 휴폐업, 재개업 신고</u> <u>다. 지위승계신고</u> <u>라. 과징금 부과</u> <u>마. 과태료 부과징수</u>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u>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u>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4조 ○ <u>같은 법 제57조</u> ○ 같은 법 제62조제2항	보건소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
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미비
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정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른 용어 순화 등

규 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칙 제70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통괄”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를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과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는”을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기존의 제2호)와 제7호(기존의 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6조제2항제3호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을 “심의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6항” 을 제4조제5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0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을 “법” 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을 “건축물대장등본”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화재 기타” 를 “화재 등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때에는” 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을 “건축물대장등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을 “건축물대장등본”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7조제3호 중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을 “건축물대장등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도면 기타” 를 “도면 등” 으로 한다.
제20조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을 “건축물대장등본” 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을 “건축물대장등본”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을 “건축물대장등본” 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당해부서” 를 각각 “해당 부서” 로 한다.
제48조제4항과 제5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 -----.
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물품 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 ----- 총괄 ----- -----.
② 구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 ----- ----- -----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당해기관의 장이 별표 1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 ----- ----- ----- ----- 해당 기관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생략)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그 밖에</u> ----- -----.
제5조(분임관리) (생략) 1. ~ 3. (생략) 4. 도면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분임관리)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 <u>그 밖에</u> -----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u>심의회</u>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1. (생략)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u>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u> 는 ----- <u>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u> <u>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u> <u>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u> 4. (현행과 같음) 5. ----- -----

현행	개정안
규정에 따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u>기타</u> 시설물의 확정사 항 3. (생략) 4. <u>기타</u>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 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1. ~ 2. (생략) 3. (생략)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 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 <u>해</u>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 (생략)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u>조례</u> <u>제4조의</u>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u>회</u>(이하 “<u>심의회</u>”라 한다)는 위원 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생략) ③ <u>심의회</u>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주 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u>심</u> <u>의회</u>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생략) 제9조(감수인의 지정) <u>제4조제6항</u>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 ----- <u>그 밖에</u> ----- ----- 6. (현행과 같음) 7. <u>그 밖에</u> -----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 <u>해</u> <u>당</u> ----- ----- 다. (현행과 같음)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u>심의</u> <u>회는</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심의회에 심의회</u>의 사무를 처리 <u>할</u>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 <u>무 담당팀장</u>이 된다.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감수인의 지정) <u>제4조제5항</u>----- ----- ----- -----

현행	개정안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도면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u>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12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 그 밖에 ----- 제10조(회계간의 재산이관) ----- ----- ----- ----- ----- 법 ----- ----- ----- -----. 제11조(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 ----- ----- 해당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12조(화재보고) ① ----- --- 화재 등의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 -----.

현행	개정안
제15조(매각신청) (생략)	제15조(매각신청)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토지대장등본 및 <u>건축물관리대장등본</u>	4. ----- <u>건축물대장등본</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8. <u>기타</u>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8. <u>그 밖에</u> -----
제16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시 까지 계속 관리한다	제16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 ----- ----- ----- ----- ----- ----- ----- ----- <u>해당</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u>건축물관리대장등본</u>	2. ----- <u>건축물대장등본</u>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5. <u>기타</u>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5. <u>그 밖에</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교환) (생략)	제17조(교환)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u>건축물 관리대장등본</u>	3. ----- ----- <u>건축물대장등본</u>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7. <u>기타</u>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7. <u>그 밖에</u> -----

현행	개정안
제19조(가격평정) ① (생략)	제19조(가격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u>당해</u>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u>도면</u>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 ----- ----- <u>해당</u> ----- ----- <u>도면 등</u> ----- -----.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u>당해</u>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인수인계) ----- -- <u>해당</u> ----- ----- ----- ----- -----.
제21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보건소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및 <u>기타</u>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등기수속 등) ① ----- ----- ----- ----- ----- ----- <u>그 밖의</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토지대장등본 및 <u>건축물관리대장 등본</u>	3. ----- <u>건축물대장 등본</u>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6. <u>기타</u>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u>그 밖의</u> ----- -----
③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취득부서	③ ----- -----

현행	개정안
의 장을 당해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 해당 ----- -----.
제22조(매수신청) ① (생략)	제22조(매수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1~5. (현행과 같음)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6.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0. 그 밖에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 (생략)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5. 그 밖에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5. 그 밖에 -----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 ----- ----- 그 밖의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9조(물품정수 책정) ① (생략)	제39조(물품정수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당해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 ----- <u>해당 부서</u> ----- ----- ----- <u>해당 부서</u> ----- ----- -----.
제48조(물품의 반납) ① ~ ③ (생략)	제48조(물품의 반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 ----- <u>해당</u> ----- ----- -----.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⑤ ----- ----- ----- ----- ----- <u>해당</u> -----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
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미비
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정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공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5-89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구역 지정 예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이 사실을 미리 주민 여러분들께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지 정 취 지

우리구 도시공원 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도시 종로를 만들고자 함.

2. 지 정 내 용

- 지 정 일 : 2015년 11월 2일
- 지정대상 및 범위

순번	명칭	종류	주소	면적(㎡)
1	창신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창신동 23-362	710.0
2	당고개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창신동 23-350	860.0
3	후창소공원	소공원	평창동 568-2	1,920.0
4	평창소공원	소공원	평창동 108-3	1,117.6

※ 지정장소 위치도 : 별첨1> 확인

- 제도기간 : 2015년 11월 2일 ~ 2015년 12월 31일
-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2016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3. 예 고 기 간 : 2015년 10월 2일 ~ 2015년 10월 21일

4. 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1일까지 별첨2> 서식에 따

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참조 : 건강증진과, 팩스 : 2148-5839, 이메일 : peony@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02-2148-362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금연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표시)

창신어린이공원



당고개어린이공원



후창소공원



평창소공원



별첨2>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구역 지정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종로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